

출제유형분석

	법령	이론	계		법령	이론	계
지방자치의 기초적 이해	-	3	3	지방자치와 주민의 참여	-	3	3
지방자치의 기본적 체계	-	3	3	지방자치의 재정	1	5	6
지방자치의 운영	1	4	5	정부 간 관계	-	-	-

01 주민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이 가능하다.
- ㉡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다른 주민이 같은 사항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소송 중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소를 취하하거나 화해 등의 방법으로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 ㉥ 소송제기의 기한은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해설 ㉠ [○]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 등의 지불 청구가 가능하다.

지방자치법 제18조 【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제2항제4호 본문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 [X] 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동법 제17조 【주민소송】 ⑥ 제2항 각 호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X] 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동법 제17조 【주민소송】 ④ 제2항에 따른 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은 허가하기 전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알린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 통지에 관하여는 제8항 후단을 준용한다.

㉣ [○]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동법 제17조 【주민소송】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동법 제17조 【주민소송】 ⑨ 제2항에 따른 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 [X]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동법 제17조 【주민소송】 ④ 제2항에 따른 소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 해당 감사결과나 조치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38, 139 / 부속법령 p.16~18



## 02 다음 권력구조에 대한 시각 중 성장기구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정치는 주로 토지의 가치와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 ② 몰로치(H. Molotch)에 의해 1970년대 중반 제기되었으며, 이후 돔호프(W. Domhoff)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확산되었다.
- ③ 지방정치는 토지자산가와 개발업자 등 토지관련 기업인을 중심으로 한 성장연합과 이를 반대하는 반성장연합의 싸움으로 귀결된다.
- ④ 바크라흐(P.Bachrach)와 바라츠(M.Baratz)가 설명한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이 그 좋은 예이다.

해설 ① [O] 성장기구론은 지방정치란 토지 또는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토지자산과 개발관계자들, 즉 성장연합이 주도한다는 이론이다.

② [O] 1970년대 중반 몰로치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이후 돔호프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확산되어 왔다.

③ [O] 성장기구론에서 지방정치는 토지자산가와 개발사업자 등 토지관련 기업인을 중심으로 한 성장연합과 이를 반대하는 반성장연합의 대립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④ [X] 바크라흐와 바라츠가 설명한 무의사결정은 신엘리트이론에 해당한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18



## 03 다음 중 지방공무원의 종류와 그 예시가 잘못 연결된 것은?

- ① 일반직 지방공무원 - 지방농촌지도사
- ② 특정직 지방공무원 - 지방소방공무원
- ③ 별정직 지방공무원 - 지방의회 전문위원
- ④ 정무직 지방공무원 - 정무부지사

해설 ④ [X] 우리나라 지방공무원제의 법체계는 형식상 국가공무원법과 구분되어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제와 거의 유사하다. 지방공무원도 동일하게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된다. 문제의 경우 '지방'을 제외하고, 농촌지도사, 소방공무원, 의회전문위원이라고 보고 해결할 수 있으며, 정답이 되는 정무부지사는 단체장이 임명하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이다(정무직×).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99, 101



**04**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중 중층제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관계 유지 가능
- ② 업무수행의 신속성 확보
- ③ 공공기능의 분업적 수행 가능
- ④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기능 보완

**해설** ①, ③, ④ [○] 중층제는 광역자치단체가 국가의 강력한 간섭과 감독으로부터 기초자치단체를 보호할 수 있고,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사무를 담당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사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공공기능의 분업적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② [×] 중층제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기능이 중첩됨으로써 이중행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와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42



**05** 다음 중 『지방자치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기구(기관)가 아닌 것은?

- ① 주민자치위원회
- ②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행정기구
- ③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 ④ 시험연구기관

**해설** ① [○]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협의기구이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0조 【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③ [×]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제121조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④ [○]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113조 【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02, 103 / 부속법령 p.53~55



**06** 다음 중 민간투자사업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BTO방식 : 사회기반시설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기간 만료 시 시설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 ② BTL방식 :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 ③ BOT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하고, 그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 ④ BOO방식 :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 해설**
- ① [X]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은 민간이 민간자본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준공(건설, Build)한 후 소유권이 정부(국가 또는 지방)에 귀속(Transfer)되는 방식이다. 이후 민간이 일정기간 동안 시설을 직접 운영(Operat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 ② [X]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은 민간이 민간자본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준공(Build, 건설)한 후 소유권이 정부(국가 또는 지방)에 귀속(Transfer)되고, 그 시설을 정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민간에게 임차(Lease)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이다.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은 BOT 방식이다.
  - ③ [X] BOT(Build Own Transfer) 방식은 일정기간 동안 시설을 직접 운용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고, 기간의 만료 시에 소유권과 운영권을 정부에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 ④ [O] BOO(Build Own Operate) 방식은 민간자본으로 민간이 준공(건설, build)한 후 민간이 소유권(own)을 가지며 직접 운용(operate)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53

▶ ④

**07** 다음 중 『지방자치법』상 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③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다시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 해설**
- ①, ②, ④ [O], ③ [X]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1개월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15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49~153 / 부속법령 p.59



### 08 다음 중 재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 ① 세종특별자치시
-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 ③ 경기도
- ④ 제주특별자치도

해설 ①, ②, ④ [○]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세목이다. 또한 재산세는 특별자치시세와 제주특별자치도세에 해당한다.

③ [X]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로 재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

지방세기본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⑤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 2. 등록면허세 / 3. 레저세 / 4. 담배소비세 / 5. 지방소비세 / 6. 주민세 / 7. 지방소득세 / 8. 재산세 / 9. 자동차세 / 10. 지역자원시설세 / 11. 지방교육세

구 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세	도 세	자치구세	시·군세
지방세	보통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60, 161



### 09 서울특별시의 2017년 예산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입예산액이 큰 순서대로 세목들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 ②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 ③ 재산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 ④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해설** [○] 서울특별시 2017년 예산서 기준으로 지방소득세 > 취득세 > 재산세 순으로 세입예산액이 크다.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서울특별시 2017년 세입예산액	4조 2,227억	3조 3,021억	2조 278억

▶ ①

**10** 아른슈타인(Arnstein)에 의해 주장된 주민행정참여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아른슈타인(Arnstein)은 주민행정참여의 단계를 6가지로 구분하였다.
- ② 위무(placation)와 정보제공(informing)은 주민행정참여에 있어서 비참여(nonparticipation) 수준에 포함된다.
- ③ 주민권력적 참여(citizen power) 수준에는 시민통제(citizen control), 권한위임(delegated power), 협력(partnership) 등이 포함된다.
- ④ 아른슈타인(Arnstein)은 주민행정참여의 각 유형을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비참여(nonparticipation)와 주민권력적 참여(citizen power) 등 2개의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해설** ① [×] 아른슈타인은 주민참여의 유형을 8개(조작, 임시치료, 정보제공, 상담, 회유, 대등협력, 권한위양, 자주관리)로 나누어 유형화 하였다.  
 ② [×] 위무(placation, 회유)와 정보제공은 형식적 참여의 수준(비참여 수준 ×)에 해당한다.  
 ③ [○] 주민권력적 참여 수준에는 협력(partnership, 대등협력), 권한위임(delegated power, 권한위양), 시민통제(citizen power, 자주관리) 등이 포함된다.  
 ④ [×] 아른슈타인은 주민행정참여의 유형을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비참여, 형식적 참여, 주민권력적 참여 3개의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아른슈타인의 주민참여의 유형>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31

▶ ③

**11** 다음 중 쿨리 독트린(Cooley doctrin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절대적인 것이며, 주(州)는 이를 앗아갈 수 없다는 원칙이다.
- ② 미국에서 1871년 디트로이트 시와 미시건 주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나온 견해이다.
- ③ 당시 미국의 대다수 주(州)에서 이 독트린은 채택되지 않았다.
- ④ 딜론의 원칙(Dillon's rule)을 뒷받침한 것이다.

**해설** ①, ②, ③ [○] 쿨리 독트린(Cooley doctrine)은 딜론의 견해가 나온 3년 뒤 디트로이트(Detroit) 시와 미시건(Michigan) 주 사이에 벌어진 한 소송에서 미시건 주의 대법관이었던 쿨리(Thomas Cooley)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절대적인 것이며 주는 이를 앗아갈 수 없다' 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④ [×] 쿨리독트린(Cooley doctrine)은 분권 지향적인 원칙인 반면 딜론의 원칙(Dillon's rule)은 집권 지향적인 원칙이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90

▶ ④

**12** 다음 중 지방자치재정의 운용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전재정의 원칙 : 최소의 경비로써 최대의 서비스를 행할 수 있도록 그 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 ② 장기적 재정안정의 원칙 : 예산의 집행, 정책과 사업계획수립의 행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적인 안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재정질서 유지의 원칙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재정운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
- ④ 지방재정운영 조화의 원칙 : 지방재정운영에 조화되는 한도 안에서 실행해야 하고 국가시책 및 국가정책의 시행을 우선해야 한다.

해설 ④ [X]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며 재정운용을 국가정책과 조화되는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가재정준수의 원칙(지방재정운영 조화의 원칙 X)이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48

▶ ④

**13** 다음 중 긴급재정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자력으로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재정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재정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기 위한 조치이다.
- ③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공무원 또는 재정관리 전문가를 긴급재정관리인으로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해야 한다.

해설 ① [X], ② [O]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재정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③ [O]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는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요건에 해당한다.

동법 제60조의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1. 제55조의2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제55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부터 3년이 지난 날 또는 그 이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
2.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3.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 ④ [○]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재정관리에 관한 전문가를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 할 수 있다.

동법 제60조의4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및 파견】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재정관리에 관한 업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인을 선임하려면 미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81



**14** 다음 중 시민공동생산(citizen co-product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원봉사활동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 ② 시민공동생산 논의는 큰 정부, 큰 서비스 실현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 ③ 시민이 공공재의 소비자로 머물지 않고 정부 등 공공부문과 함께 공공재를 같이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 ④ 1980년대 초 오스트롬(V.Ostrom)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에 의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해설 ① [○] 시민공동생산의 대표적인 예는 자원봉사활동이다.

- ② [X] 시민공동생산 논의는 작은 정부(큰 정부 X), 큰 서비스 실현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 ③ [○] 시민공동생산은 정규생산자인 정부와 소비생산자인 시민 또는 지역주민이 공공서비스를 같이 생산하는 것으로 정의 될 수 있다.
- ④ [○] 시민공동생산은 1980년대초, 오스트롬(V. Ostrom)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에 의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07



**15**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대체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지방선거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여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긴급 상황에서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선결처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③ 재정자립도란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비중을 말한다.
- ④ 자치재정권이 인정되므로 조례를 통한 독립적인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해설** ① [X] 대체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높게 나타난다.  
 ② [O] 자치단체장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 판단 하에 우선적으로 행하는 선결처분권을 가진다.  
 ③ [X]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지방교부세 X)의 비중을 말한다.  
 ④ [X]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법률주의로 조례를 통한 독립적인 지방 세목을 설치 할 수 없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99,159,178

▶ ②

**16** 다음 중 광역행정에 있어서 관할구역의 다양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신지방분권화(new decentralization)
- ② 권한의 대립(conflict of authority)
- ③ 불충분한 서비스(inadequacy of services)
- ④ 지역계획의 결여(lack of regional planning)

**해설** ① [X] 광역행정으로 인해 신중앙집권화(신지방분권화 X)의 경향성이 발생 할 수 있다.  
 ② [O]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로 인해 권한의 대립(conflict of authority)이 발생할 수 있다.  
 ③, ④ [O] 지역별 다양한 행정수요가 경시되어 불충분한 서비스(inadequacy of services), 지역계획의 결여(lack of regional planning)등이 나타날 수 있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210

▶ ①

**17** 티보우(Tiebout)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feet)’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 ② 무임승차(free rider) 문제는 정치적 수단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③ 적정수준의 지방자치단체가 될 때까지 주민구성의 재분류가 일어난다고 지적한다.
- ④ 지방공공재를 공급하는 분권화된 체제의 효율성을 통해 지방자치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해설** ① [O] 티보우(Tiebout) 가설은 발로 하는 투표에 의해서 선호표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② [X] 티보우(Tiebout) 가설은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무임승차(free rider)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며 이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 ③ [○] 티보우(Tiebout) 가설에 의하면 적절한 규모보다 작은 지역은 더 낮은 평균비용으로 공공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거주자들을 유인하려고 하고, 적정 규모의 인구를 넘어선 지역은 더 높은 평균 비용이 발생하므로 새로운 이주자를 배척하게 되며 적정규모를 유지하는 지역은 인구를 원래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지방자치단체가 될 때까지 주민구성의 재분류가 일어나게 된다.
- ④ [○] 티보우(Tiebout) 가설은 지방공공재는 지방정부로 구성된 분권화체제하에서 효율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참고 ▶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47

▶ ②

**18** 다음 중 외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국에서 과거에 설립되었던 특별자치제(ad hoc authority)와 공동협의회를 예로 들 수 있다.
- ② 미국은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한 각종 특별구역이 무수히 난립되어 있다.
- ③ 프랑스는 지역행정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1870년부터 목적조합(Zweckverband), 지역구 등의 특별자치단체를 도입하였다.
- ④ 독일은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자치단체로서, 게마인데(Gemeinde)연합 및 광역연합 등이 구성되어 있다.

해설 ▶ ③ [×] 프랑스에서는 광역행정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코뮌(commune)조합, 연합구, 도시공동체 등의 특별자치단체가 설립되어 있다. 목적조합(Zweckverband)은 특정사무를 공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복수의 게마인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社團)으로 독일의 특별자치단체이다.

▶ ③

**19**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수단을 주민협조적 참여, 주민감시적 참여, 주민권력적 참여로 구분할 때 주민권력적 참여의 수단으로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

- ① 주민소환제도
- ② 주민투표제도
- ③ 주민옴부즈만제도
- ④ 주민발의제도

해설 ▶ ①, ②, ④ [○] 주민권력적 참여에는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발의제 등이 해당한다.  
 ③ [×] 주민옴부즈만제도는 주민감시적 참여에 해당한다.

주민협조적 참여	민원모니터제도, 공청회, 설명회, 자원봉사제도 등
주민감시적 참여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송제, 주민옴부즈만제도,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권력적 참여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발의제 등

참고 ▶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42

▶ ③

**20** 다음은 지방교육자치의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가. (㉠) 관점은 본질적 요소인 교육사무의 지방분권, 주민참여 및 정부의 중립성이 균형되게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 (㉡) 관점은 지방교육자치의 목적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의 보장에 있으며,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분리형이 유리한 제도임을 주장한다.  
 다. (㉢) 관점은 교육행정기관의 획일적인 규제와 간섭으로부터 독립하여 법규의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 하에 교육을 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	㉡	㉢
㉠	교육행정기관의 자치	교육주체의 자치	지방교육자치의 일환
㉡	교육행정기관의 자치	지방교육자치의 일환	교육주체의 자치
㉢	지방교육자치의 일환	교육행정기관의 자치	교육주체의 자치
㉣	지방교육자치의 일환	교육주체의 자치	교육행정기관의 자치

**해설** ㉠ 지방교육자치의 일환 - 교육의 지방분권, 교육현장의 자율성, 정부의 중립성 등을 주장하는 관점이다.

㉡ 교육행정기관의 자치 - 일반-교육행정의 분리·독립보장을 주장하는 관점이다.

㉢ 교육주체의 자치 - 교육현장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관점이다.

	교육행정기관의 자치	교육주체의 자치	지방교육자치
강조측면	일반기관과 교육기관 간 관계	교육행정기구와 교육주체 간 관계	중앙-지방관계, 교육 행정 기관과 교육주체와의 관계 및 정부기득권층의 관계
지향방향	교육영역의 독자성 (교육자치)	교육주체의 자율성	교육의 자율성 지방자치 발전
일반-교육관계	분리·독립	통합	통합
교육의 특수성	매우 강조	강조	강조
분권의 성격	기능분권	기능분권	지역분권, 기능분권
주요 참여자	교육자	교육주체	교육주체 및 주민
처방	일반·교육행정의 분리·독립보장	교육현장의 자율성	교육의 지방분권, 교육현장의 자율성, 정부의 중립성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80, 81

▶ ③